

<p style="text-align: center;">書面答辯書</p> <p>○金明珠議員</p> <p>(質疑要旨)</p> <p>주택재개발 활성화 자금 지원체계 개선</p> <p>주택재개발 자금이 적기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 시에서 주택은행 등과 연계하여 책임 있게 추진할 용의는?</p> <p>(答 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6월 24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2년간에 걸쳐 1,000억 원씩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자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대출시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채무부 담행위 승인 절차 등이 필요하여 적기에 지원되기가 어려움을 감안, '98.8.6.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 주택공사 등 관계관 회의를 갖고 주택은행에서 직접 채권확보 및 적격심사 후 대출하는 방안과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연 12%→연 3%)하여 우리 시에서 임대주택 구입을 위한 재개발지원자금으로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 주택은행측에서는 담보확보 등의 이유로 시 공사에 대한 직접용자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시 공사 등에 대한 대출은 불가하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당초 지원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지원중단된 재개발구역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98.8.19. 건설교통부에 자금신청하였으며, '98.8.22일자로 1,28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본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에 상정된 '98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지원대상 구역의 관할 자치구로 하여금 구청장 책임하에 중단지연된 재개발구역에 신속히 대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p>-용자승인: 2,000억('98년도 1,000억, '99년도 1,000억)</p>	<p>-대출조건: 연리 12%, 3년거치 5년상황 -대출 절차: 주택은행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시행자</p> <p>(質疑要旨)</p> <p>서울시의 건축폐기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5가지 제안사항에 대한 견해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례에 있는 하치장 300평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자유롭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② 신축현장이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정확히 분리하여 중간처리장으로 갈 물량들을 구분하여 운반 ③ 경기도 등 외곽에 있는 중간처리업체와 최종 처리업체의 서울시내 수집운반행위 인정 ④ 시 발주공사 등에서 폐기물처리비를 수령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 처리원본을 처리확인서로 대체 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파쇄기 설치를 금지, 설치해야 한다면 소음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p>(答 辨)</p> <p>① 조례에 있는 하치장 300평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자유롭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대하여</p> <p>○ 91.9.26. 건설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그 관리정도 시·도로 지정되었으며</p> <p>○ 우리 시에서는 '93.3월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그 처리체계를 조기에 확립코자 중간집하장(1,650㎡이상)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자유업→허가제 전환)</p> <p>○ 중간집하장은 수도권매립지 야간 반입제한에 따른 임시적환 및 이적공간의 확보 필요성과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업의 필수시설로 보고</p> <p>○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중간집하장을 허가요건으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p>
---	--

- | | |
|--|--|
| <p>○ 그러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에서 중간집하장을 제외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 곤란, 이에 따른 불법투기가 우려되고 소량배출 폐기물처리 기관 등 또 다른 민원의 발생이 예상됩니다.</p> <p>○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배출·수거여건 등의 특수성으로 중간집하장의 운영이 필요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제완화를 위해 공동집하장제 도입, 또는 집하장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p> <p>② 신축현장이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정확히 분리하여 중간처리장으로 갈 물량들을 구분운반에 대하여</p> <p>○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선별·분리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중간처리업체 등으로 반입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p> <p>③ 경기도 등 외곽에 있는 중간처리업체와 최종처리업체의 서울시내 수집운반 행위 인정여부에 대하여서는</p> <p>○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96.3.5)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은 시·도 간협의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 방지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타시·도 중간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영업구역 확대 협의 처리하고 있으나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p> <p>④ 시 발주공사 등에서 폐기물처리비를 수령하기 위한 수도권 매립지 처리원본을 처리 확인서로 대체하는 사항에 대하여</p> <p>○ 건설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 또는 중간처리업체 등 적정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시설에서는 반입한 폐기물량에 대하여 매립지 반입전표·처리확인서 등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p> <p>○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컴퓨터로 반입전표를 자동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중간처</p> | <p>리업체 등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처리확인서 등을 업체별로 발급사용하고 있습니다.</p> <p>○ 앞으로 우리 시 발주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한 건설폐기물을 관련기관에 협조하여 가능한 중간처리되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파쇄기 설치를, 금지, 설치해야 한다면 소음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p> <p>○ 환경부 건설폐기물관리지침(96.4.25)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하여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하고, 파쇄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p> <p>○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파쇄시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파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충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p> |
|--|--|

(質疑要旨)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생활폐기물의 구청 적정처리로 매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시에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내로 80% 이상을 민영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答辯)

○ 어제 김판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처리업무의 과감한 민간이양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 민간대행이 가능한 부분은 청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최대한 민영화하고 자치구의 적정부분은 고지대 등 수거여건이 어려운 지역과 비상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규모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자치구 지역청소의 경우 대행비율이 '95년의 51%에서 '98년 상반기에 68%로 확대되었으며 '99년에는 73%, 2002년에는 8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청소의 민간대행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質疑要旨)

○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재개발·재

<p>건축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시정사항을 제시하니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p> <p>① 재건축의 경우 80% 이상 동의시 조합인가, 90% 이상 동의시 사업인가, 100% 동의시 착공, 재개발의 경우 2/3 이상 동의시 사업승인이 되는 바, 주민동의를 100% 받았을 때 조합인가와 사업승인을 동시에 내주어야 할 것임.</p> <p>② 재건축인 경우 나대지 및 사도 소유자에게도 소유권 확보 시점을 규정하여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p> <p>③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300%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시민부담을 가중하게 되므로 지구별 용적률 한도를 높여서 시행</p> <p>(答 辩)</p> <p>○ 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재건축·재개발의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의 요건 등은 미동의자에 대한 처리문제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으로서 착공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p> <p>따라서 우리 시는 재건축시에는 미동의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적용문제 등을 수차례 건설교통부에 법개정 전의한 바 있으나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p> <p>현행법 체계상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인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승인전 사전에 조합설립인가를 함으로써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설계준비, 조합원 동의, 사업 승인 준비 등의 재건축·재개발의 추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을 우선토록 규정한 것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00% 동의시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추진도 원활히 이루어지리라 봅니다.</p> <p>○ 두 번째, 나대지 소유자나 사도 소유자에게도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p> <p>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란 재개발사업처럼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갖추며,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의 쉽게 노후·불량</p>	<p>주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세 번째 질문하신 지구별 용적률 적용에 대하여는, 과거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그동안 고밀개발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 교통체증, 도시기반시설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4월 30일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300%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 魏大運議員 (質疑要旨)</p> <p>○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기준 항목의 가중치 등 개선 필요</p> <p>○ 역교부금제도 도입에 따라 교부 자치구의 정세노력을 저하시킨다는 답변에 수긍할 수 없으니 답변 바랍니다.</p> <p>(答 辩)</p> <p>□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시 기능별 가중치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가중치 부여방안뿐만 아니라 조정교부금 배분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합리적인 측정을 위한 개선방안중 한 가지로 포함하여 연구·검토중에 있는 사안임.</p> <p>○ 구체적으로 예시하신 영구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의 장애인 복지수요에 관하여는 각 자치구의 장애인 복지관련 재정수요를 판단할 때 장애인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일 뿐 아니라 이들 중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 조례에서도 가구수에 비례하여 기준재정수요로 산정, 사실상 지원되고 있으므로 별도 항목에 가중치를 꼭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p> <p>○ 김포매립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자치구의 쓰레기 운반비용가중에 따른 가중치 부여에 관해서는 충분이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향후 제도개선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p> <p>□ 역교부금제도는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p>
--	--

금 재원을 부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제도임.
○ 이 제도는 독일·일본 등 일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음.

장점으로는 재정력 여력이 큰 자치단체가 적정규모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들이 적정규모의 지방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줌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 자치력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며
-재정력이 큰 자치단체 및 그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필연적이며
-자치단체들의 조세 징수노력을 감소시킬 우려 등이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사항임.
○ 역교부금제도 도입의 실행 조건으로 기존의 지방재정조정제도(교부세·양여금등)와 조세체제의 정비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자치적 재원을 확보한 상태이어야 함.

○ 우리 나라는 지방재정의 절대적 취약성, 조세체제의 국세 편중 등으로 획기적인 조세체제의 개혁이 없이는 이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그리고 역교부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치구의 징세노력이 다소 저하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재정력이 우수하여 재원이 남는 구에서는 필요한 재원만큼만 확보하고 그 이상의 잉여재원은 납부금으로 빼앗긴다는 피해의식에서 징수노력을 계울리할 수도 있다는 뜻임.

○ 한편, 정부와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보면 서울시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매년 120% 이상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역교부금제도가 운영될 경우 서울시에서 국가로 역교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음.

*'98서울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24%

(質疑要旨)

다수 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등 기술적이 책임인 간부직에 행정직을 보임하고 있는바, 해결방안은?

(答 辯)

□ 서울시 자치구의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 직위에 대한 보임현황은 '89년도까지는 행정직 25석, 기술직 25석의 직위를 통수의 비율로 점유하고 있었으나, 행정수요의 다양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현재 각 구청의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 50석 직위중 34석(토목 18, 건축 15, 지적 1)이 기술직으로 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6석은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자치구의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에 대한 기술적 보임확대 여부는 자치구청장이 구정여건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행정수요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韓鳳洙議員

(質疑要旨)

○ 재정적자 개선대책 관련
-세외수입 증대방안

(答 辨)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체제 이후 세수감소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세수의 근간인 지방세의 세입결합이 예상되어 음성탈루수입원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인 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각 세입부서의 관계관회의를 열어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서는

○ 음성탈루수입원 발굴은 도로·하천점사용료 등에 대하여 실사용 면적을 측량, 부과 면적과 대조하여 그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96년에는 2,148건의 측량대상 중 933건 1,361백만원을, '97년에는 2,288건의 측량대상 중 1,191건 1,493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98년 상반기에는 372건 536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사용료·수수료에서는 요율을 분석하여 원

<p>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장기 미조경 요금, 유사요금에 비해 저렴한 요금 등에 대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연차별로 현실화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의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현실화를 유보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세입증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공원·체육·문화시설관리사업소 등에서 다채로운 이벤트개발(미술대회, 홍학쇼, 라이브콘서트, 생활체육교실, 각종 경기행사) 및 공연연회를 늘리는 등 여러 각도에서 세입증대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p> <p>○ 또한 공유시설 임대방법에 있어서도 수의 계약 임대방법에서 공개경쟁방법으로 전환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의 증대, 한강둔치지구, 시 산하 각 청사광장, 공유재산 유휴지 등 주차구획 가능지역에서의 주차장 수입을 늘리는 등 공유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이 저조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세입증대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p> <p>□ 앞으로도 세외수입분야에서 탈루수입원 발굴은 물론이고 신규수입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質疑要旨) 지방세 세목간 교환관련 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 교환추진을 재검토하여 협행대로 존치 바람. (答 辯)</p> <p>□ 우리 시는 지역별로 중심기능이 분화되어 하나의 단일 생활권으로 형성·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p> <p>□ 그러나 우리 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실태를 보면, 일부 구(강남)는 기준재정수요액의 2배를 초과하는 반면, 일부구(강북, 도봉)는 1/3수준임. 이러한 자치구별 재정격차는 동일 생활권 내에서 지역개발투자나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유발하고, 장래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p> <p>□ 그 주요인이 종토세의 지역간 편중 때문으로</p>	<p>파악되어 시세중 세수의 규모가 비슷하고 비교적 분포가 고른 담배소비세를 종토세와 교환하여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p> <p>□ 이처럼 세원이 조정될 경우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총족도가 평균 67%에서 71%로 향상되고,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는 자체재원이 각각 60~70억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p> <p>□ 앞으로 세원조정으로 일시에 재원이 감소되는 일부 자치구에 대한 재정조정교부금 지원 등 재정충격완화 방안을 마련, 지난 9월 7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와 신중히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p> <p>(質疑要旨)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꽃을 생산·공급함에 있어 1본의 가격이 '97년 평균 500원이고 '98년에 440원이라고 했는데 생산비가 IMF로 인하여 많이 상승하였을 텐데 오히려 생산비를 낮추어 280원에 판매한다면 차액 160원은 누가 물고 있는지? (答 辯)</p> <p>○ 우리 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꽃 종류는 80~100종으로 당초 생산단계에서 단가를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p> <p>○ 생산가격이 440원으로 산출된 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펜지는 245원, 국화의 경우 1,750원(쿠션망)에서 14,000원(입국)이고, 전시용 조롱박의 경우 완성품이 25,000원 등으로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총비용을 총생산 물량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수치이며, 공급가격 280원이라는 것은 펜지, 일일초, 폐튜니아, 그란화, 리빙스텐데이지 등의 일부 저가 초화류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산가격은 189원이고 공급하는 가격은 245~280원이 되는 것입니다.</p> <p>○ 향후 화훼재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	--